

[붙임1]

- ◆ 제1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- 정관변경 (안) 신/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 후 (안)	비고
<p>제2조 (목적)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2. 적층 및 표면처리지의 개발, 생산 및 판매업</p> <p>5. <u>잉크충진장비 및 관련제품의 개발, 생산 및 판매업</u></p> <p><신 설></p> <p>1. 전자산업용 잉크의 개발, 생산 및 판매업</p> <p>3. 전자산업에 관련된 제품의 개발, 생산 및 판매업</p> <p><신 설></p> <p>4. 전자재료용 인쇄장비의 개발, 생산 및 판매업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6. 연구 및 기술개발 서비스업</p> <p>7. 섬유 제품 제조 및 판매업</p> <p>8. 봉제 의류 및 모피제품 제조 및 판매업</p> <p>9. 도매 및 소매업</p> <p>10. 통신 판매업</p> <p>11. 인쇄 출력 서비스업</p> <p>12. 프랜차이즈 유통업</p> <p>13. 보관 및 창고업</p> <p>14. 부동산 및 동산 임대업</p> <p>15. 수출입 및 대행업</p> <p>16. 기타 상기 각 호에 관련된 기술용역과 기술훈련 및 부수사업 일체</p>	<p>제2조 (목적)</p> <p>1. <u>잉크젯잉크 제조 및 판매업</u></p> <p>2. <u>잉크젯프린터 주변기기 및 소모품 제조 판매업</u></p> <p>3. <u>잉크젯용 전용지 등의 제조 및 위탁제조 판매업</u></p> <p>4. 적층 및 표면처리지의 개발, 생산 및 판매업</p> <p><삭 제></p> <p>5. <u>디지털 프린터 제조, 판매업</u></p> <p>6. 전자산업용 잉크의 개발, 생산 및 판매업</p> <p>7. 전자산업에 관련된 제품의 개발, 생산 및 판매업</p> <p>8. <u>전자재료 제조 판매업</u></p> <p>9. 전자재료용 인쇄장비의 개발, 생산 및 판매업</p> <p>10. <u>회로기판 및 재료 제조 판매업</u></p> <p>11. <u>기타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</u></p> <p>12. 연구 및 기술개발 서비스업</p> <p>13. 섬유 제품 제조 및 판매업</p> <p>14. 봉제 의류 및 모피제품 제조 및 판매업</p> <p>15. 도매 및 소매업</p> <p>16. 통신 판매업</p> <p>17. 인쇄 출력 서비스업</p> <p>18. 프랜차이즈 유통업</p> <p>19. 보관 및 창고업</p> <p>20. 부동산 및 동산 임대업</p> <p>21. 수출입 및 대행업</p> <p>22. 기타 상기 각 호에 관련된 기술용역과 기술훈련 및 부수사업 일체</p>	<p>조항 번호 수정 및 사업의 목적 추가</p>
<p>제9조 (주권의 종류)</p>	<p>제9조 (주권의 종류)</p>	<p>전자증권법 시행에 의한</p>

◆ 제1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 — 정관변경 (안) 신/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후 (안)	비 고
<p>주권의 종류는 일주권, 오주권, 일십주권, 오십주권, 일백주권, 오백주권, 일천주권,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.</p>	<p>< 삭 제 2019.09.16 ></p>	<p>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라 삭제 (전자증권법 제25조제1항)</p>
<p>< 신 설 ></p>	<p>제9조의2 (주식 등의 전자등록) <u>회사는 주식,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내용 신설</p>
<p>제12조 (명의개서 대리인) ①~② (생 략)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, <u>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, 주권의 발행, 신고의 접수,</u>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한다.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.</p>	<p>제12조 (명의개서 대리인) ①~② (현행과 동일)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, <u>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</u>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한다. ④ (현행과 동일)</p>	<p>전자증권법 시행에 의한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</p>
<p>제13조 (주주 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)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,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.</p>	<p>제13조 (주주 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) ①~③ < 삭 제 2019.09.16 ></p>	<p>전자증권법 시행에 의한 주식 등이 전자등록됨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</p>
<p>제17조 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<u>제12조,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</u></p>	<p>제17조 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<u>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</u></p>	<p>전자증권법 시행에 의한 제13조의 삭제에 따른 문구 정비</p>
<p>제45조의2 (외부감사인의 선임)</p>	<p>제45조의2 (외부감사인의 선임)</p>	

◆ 제1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 — 정관변경 (안) 신/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후 (안)	비 고
<p><u>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 기준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게재한다.</u></p>	<p><u>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,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외감법 명칭 변경에 의한 자구수정 및 외감법 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권한의 개정내용 반영</p>
<p>부칙 제3조 (시행일) 1.~16. (생략)</p>	<p>부칙 제3조 (시행일) 1.~16. (현행과 동일) <u>17. 이 정관은 2019년 3월 22일부터 변경·시행한다. 다만 제9조, 제9조의2, 제12조, 제13조, 제17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(2019.09.16자)로부터 변경·시행한다.</u></p>	